의안번호	2215993
의 뢰 인	박형수 의원
회 답 일	2026. 2. 11.
추계번호	26E0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30년 18.4억원, 2040년 18.4억원 등 11년간 총 368억원(연평균 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table>
<tr><td></td><td>2030</td><td>2031</td><td>2032</td><td>2033</td><td>2034</td><td>2035</td><td>2036</td></tr>
<tr><td rowspan="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18조의3)</td><td>−18.4</td><td>−36.8</td><td>−36.8</td><td>−36.8</td><td>−36.8</td><td>−36.8</td><td>−36.8</td></tr>
<tr><td colspan="2">2037</td><td colspan="2">2038</td><td colspan="2">2039</td><td colspan="2">2040</td><td>누적</td><td>연평균</td></tr>
<tr><td colspan="2">−36.8</td><td colspan="2">−36.8</td><td colspan="2">−36.8</td><td colspan="2">−18.4</td><td>−368</td><td>−33</td></tr>
</table>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8년 12월 31일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 해당 특례는 취업일로부터 10년간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2029 ~ 2030년 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세수효과는 2030~2041년 발생함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5년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하되, 누적된 실적을 연단위로 환산 후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누적액이므로 해당 실적액을 연단위로 환산하고, 2025년 연단위 환산액이 향후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연도별로 배분하여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산출

– 동 특례는 2020년 국내로 복귀한 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매년 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되어 연도별 감면 실적으로 보고됨

	감면액 발생시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2024년 복귀자					
	2021년 감면실적	2022년 감면실적	2023년 감면실적	2024년 감면실적	2025년 감면실적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국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50%를 10년간 감면함

○ 대상자: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국내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1]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자

○ 감면내용: 취업일부터 10년* 동안 소득세 50% 세액감면

*2022년 개정을 통해 감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기존 복귀자에게도 적용)

○ 현행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자

❑ (감면실적) 동 특례는 2020년 국내복귀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후, 연도별로 감면실적이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감면실적	신설	0	17	11	15	24	92

주: p는 잠정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 방법

❑ (추계방법) 2025년 감면실적(잠정치)을 연단위로 환산 후, 해당 환산액이 향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세수효과 추정

○ 각 연도별 감면실적은 과거 국내복귀자에 대한 감면액이 누적된 금액으로, 이를 취업자 복귀시점에 따른 연단위로 환산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표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실적 연단위 환산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잠정치)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A)	17	11	15	25	92
2020년 복귀자					
2021년 복귀자					
2022년 복귀자					
2023년 복귀자					
2024년 복귀자					
연단위 환산액 (A/누적연도□)	17	5.5	5	6.25	18.4

○ 2025년 연단위 환산액의 평균(18.4억원)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산출

[표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발생

(단위: 억원)

	2030	2031	2032	…	2038	2039	2040
2029년 복귀자	18.4	18.4	18.4	…	18.4	18.4	
2030년 복귀자		18.4	18.4		18.4	18.4	18.4

(3) 추계결과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30년 18.4억원, 2040년 18.4억원 등 11년간 총 368억원(연평균 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18조의3)	−18.4	−36.8	−36.8	−36.8	−36.8	−36.8	−36.8
	2037	2038	2039	2040	누적	연평균	
	−36.8	−36.8	−36.8	−18.4	−368	−33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